

남북협력기금
재무제표에 대한
감 사 보 고 서

제 23 기 2013년 1월 1일부터 2013년 12월 31일까지

삼 정 회 계 법 인

목 차

외부감사인의 감사보고서	1
재무제표	
재정상태표	3
재정운영표	5
순자산변동표	6
재무제표에 대한 주석	7

삼정회계법인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152
(역삼동, 강남파이낸스센터 10층)
우. 135-984

전화 (02) 2112 0100
팩스 (02) 2112 0101
www.kr.kpmg.com

외부 감사인의 감사 보고서

남북협력기금
기금수탁관리자 귀하

2014년 2월 7일

본 감사인은 첨부된 남북협력기금(이하 "기금")의 2013년 12월 31일 현재의 재정상태표와 동일로 종료되는 회계연도의 재정운영표 및 순자산변동표를 감사하였습니다. 이 재무제표를 작성할 책임은 기금수탁관리자인 한국수출입은행에 있으며 본 감사인의 책임은 동 재무제표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고 이를 근거로 이 재무제표에 대하여 의견을 표명하는데 있습니다. 비교표시된 2012년 12월 31일로 종료되는 회계연도의 재무제표는 타감사인이 감사하였으며, 이 감사인의 2013년 2월 1일자 감사보고서에는 적정의견이 표명되었습니다.

본 감사인은 대한민국의 회계감사기준에 따라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이 기준은 본 감사인이 재무제표가 중요하게 왜곡표시되지 아니하였다는 것을 합리적으로 확신하도록 감사를 계획하고 실시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감사는 재무제표상의 금액과 공시내용을 뒷받침하는 감사증거에 대하여 시사의 방법을 적용하여 검증하는 것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또한 감사는 재무제표의 전반적인 표시내용에 대한 평가뿐만 아니라 재무제표 작성을 위해 기금수탁관리자가 적용한 회계원칙과 유의적 회계추정에 대한 평가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본 감사인이 실시한 감사가 감사의견 표명을 위한 합리적인 근거를 제공하고 있다고 본 감사인은 믿습니다.

본 감사인의 의견으로는 상기 재무제표가 기금의 2013년 12월 31일 현재의 재정상태와 동일로 종료되는 회계연도의 재정운영결과 및 순자산의 변동을 국가회계기준에 따라 중요성의 관점에서 적정하게 표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감사의견에 영향이 없지만 감사보고서 이용자의 합리적인 의사결정에 참고가 되는 사항입니다.

(1) 북한조선무역은행 및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KEDO) 대여금

재무제표에 대한 주석 5 에서 설명하고 있는 바와 같이 기금은 북한조선무역은행의 대여금 981,998백만원 및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KEDO)의 대여금 1,374,393백만원에 대해서는 국가회계기준에 관한 규칙 제58조 및 제9차 국가회계제도심의위원회에서 승인된 남북협력기금 세부회계처리기준에 의거하여 용자보조원가충당금을 설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2013년 12월 31일 현재 상기 북한조선무역은행 대여금 및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KEDO) 대여금은 관련 차주의 특성상 향후 상황변화 등에 따라 회수가능성에 유의적인 불확실성이 존재하며, 이 중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KEDO) 대여금의 경우 2013년 12월 31일 현재 대북경수로사업이 중단된 상태로서 향후 사업재개의 불확실성으로 인하여 동 대여금의 회수가능성에는 특히 유의적인 불확실성이 존재합니다.

(2) 경제협력사업보험

재무제표에 대한 주석 11 에서 설명하고 있는 바와 같이 남북경제협력사업과 관련한 보험계약은 대북사업의 특성상 일반적인 보험계약과는 달리 정치적 위험인 비상위험이 크게 내재되어 있기 때문에 장래 보험금의 지급이 발생할 가능성을 합리적으로 판단하기 어렵고 그 금액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없습니다. 이에 따라 기금은 국가회계기준에 관한 규칙 제 44조 및 보험회계준칙에 의거한 보험충당부채를 설정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삼 정 회 계 법 인

대표이사 김 교 태



이 감사보고서는 감사보고서일 (2014년 2월 7일) 현재로 유효한 것입니다. 따라서 감사보고서일 이후 이 보고서를 열람하는 시점까지의 기간 사이에 첨부된 기금의 재무제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건이나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으며 이로 인하여 이 감사보고서가 수정될 수도 있습니다.

재 정 상 태 표

제 23 기 2013 년 12 월 31 일 현재
제 22 기 2012 년 12 월 31 일 현재

남북협력기금

(단위: 원)

과 목	제 23(당) 기		제 22(전) 기	
자산				
I. 유동자산		939,875,420,305		1,045,694,084,499
1. 현금및현금성자산(주석 3)		422,792,506,782		400,290,608,200
1) 현금및현금등가물	422,792,506,782		400,290,608,200	
2. 단기금융상품(주석 3)		173,500,000,000		148,100,000,000
1) 정기예금	42,500,000,000		121,100,000,000	
2) 기타의단기금융상품	131,000,000,000		27,000,000,000	
3. 단기투자증권(주석 4)		110,581,352,609		406,998,084,400
1) 지분증권	110,581,352,609		406,998,084,400	
4. 미수채권(주석 11)		64,276,818,714		4,955,095,113
1) 미수이자수익	8,302,609,865		4,955,095,113	
2) 기타의미수금	60,137,578,490		-	
기타의미수금대손충당금	(4,163,369,641)		-	
1) 기타의미수금대손충당금	(4,163,369,641)		-	
5. 단기대여금(주석 5,6)		168,724,742,200		85,350,296,786
1) 정부외단기대여금	178,859,681,832		92,159,390,490	
단기대여금대손충당금	(10,134,939,632)		(6,809,093,704)	
1) 단기융자금대손충당금	(2,971,465,843)		(2,227,154,254)	
2) 단기융자보조원가충당금	(7,163,473,789)		(4,581,939,450)	
II. 투자자산		2,637,052,291,286		2,567,994,193,365
1. 장기대여금(주석 5,6)		2,528,503,138,286		2,567,994,193,365
1) 정부외장기대여금	2,537,695,265,391		2,576,247,943,370	
장기대여금대손충당금	(9,192,127,105)		(8,253,750,005)	
1) 장기융자금대손충당금	(5,923,899,963)		(5,992,461,287)	
2) 장기융자보조원가충당금	(3,268,227,142)		(2,261,288,718)	
2. 장기투자증권(주석 4)		108,549,153,000		-
1) 지분증권	108,549,153,000		-	
III. 일반유형자산		29,292,096,292		14,797,211,390
1. 건설중인일반유형자산(주석 7)		29,292,096,292		14,797,211,390
1) 건설중인토지	9,806,439,032		5,839,098,720	
2) 건설중인건물	19,485,657,260		8,958,112,670	
IV. 기타비유동자산		68,484,913,346		68,398,744,455
1. 장기미수채권(주석 6)		68,484,913,346		68,398,744,455

과목	제 23(당) 기		제 22(전) 기	
1) 장기미수이자수익	68,484,913,346		68,398,744,455	
자산총계		3,674,704,721,229		3,696,884,233,709
부채				
I. 유동부채		311,606,434,550		550,306,594,299
1. 유동성장기차입부채(주석 8)		291,591,000,000		530,000,000,000
1) 유동성장부내장기차입금	291,591,000,000		530,000,000,000	
2. 기타유동부채		20,015,434,550		20,306,594,299
1) 미지급비용	20,015,434,550		20,306,594,299	
II. 장기차입부채		2,070,900,000,000		1,832,491,000,000
1. 장기차입금(주석 8)		2,070,900,000,000		1,832,491,000,000
1) 정부내장기차입금	2,070,900,000,000		1,832,491,000,000	
부채총계		2,382,506,434,550		2,382,797,594,299
순자산				
I. 적립금및잉여금		1,285,367,781,070		1,295,388,555,010
II. 순자산조정(주석 10)		6,830,505,609		18,698,084,400
순자산계		1,292,198,286,679		1,314,086,639,410
부채와순자산계		3,674,704,721,229		3,696,884,233,709

“첨부된 재무제표에 대한 주석은 본 재무제표의 일부입니다.”

재 정 운 영 표

제 23 기 2013 년 1 월 1 일부터 2013 년 12 월 31 일까지
제 22 기 2012 년 1 월 1 일부터 2012 년 12 월 31 일까지

남북협력기금

(단위:원)

과 목	제 23 (당) 기			제 22 (전) 기		
	총원가	수익	순원가	총원가	수익	순원가
I. 프로그램순원가(주석 9, 11)	44,315,219,698	(11,209,768,434)	33,105,451,264	42,514,553,126	(9,829,890,461)	32,684,662,665
1. 남북사회문화교류프로그램	2,069,032,727	(15,327,460)	2,053,705,267	2,429,669,618	(38,547,490)	2,391,122,128
2. 인도적문제해결프로그램	15,485,415,746	(474,418,680)	15,010,997,066	2,949,052,001	(4,708,400)	2,944,343,601
3. 남북경제협력프로그램	17,896,252,828	(8,800,928,659)	9,095,324,169	24,605,242,615	(7,701,751,675)	16,903,490,940
4. 개성공단지원프로그램	8,864,518,397	(1,919,093,635)	6,945,424,762	12,530,588,892	(2,084,882,896)	10,445,705,996
II. 관리운영비			111,041,610			71,617,940
1. 경비			111,041,610			71,617,940
(1)외주용역비			111,041,610			71,617,940
III. 비배분비용			123,841,613,551			193,548,187,356
1. 이자비용			108,534,687,241			112,669,994,738
2. 평가손실			15,257,754,280			80,878,202,618
3. 자산처분손실			49,172,030			-
IV. 비배분수익			41,324,656,983			41,960,866,074
1. 이자수익			25,745,122,653			31,671,485,774
2. 자산처분이익			15,579,534,330			10,289,380,300
V. 재정운영순원가 (I+II+III-IV)			115,733,449,442			184,343,601,887
VI. 비교환수익등			212,675,502			2,171,310
1. 기타채원조달및이전			212,675,502			2,171,310
VII. 재정운영결과(V-VI)			115,520,773,940			184,341,430,577

"첨부된 재무제표에 대한 주석은 본 재무제표의 일부입니다."

순자산변동표

제 23 기 2013 년 1 월 1 일부터 2013 년 12 월 31 일까지
제 22 기 2012 년 1 월 1 일부터 2012 년 12 월 31 일까지

남북협력기금

(단위: 원)

과 목	기본순자산	적립금및잉여금	순자산조정	합계
I. 기초순자산(전기초)	-	1,366,929,985,587	16,345,933,397	1,383,275,918,984
1. 보고금액	-	1,366,929,985,587	16,345,933,397	1,383,275,918,984
II. 재정운영결과	-	184,341,430,577	-	184,341,430,577
III. 조정항목	-	112,800,000,000	2,352,151,003	115,152,151,003
1. 투자증권평가이익(주식 4)	-	-	2,352,151,003	2,352,151,003
2. 기타순자산의증감	-	112,800,000,000	-	112,800,000,000
IV. 기말순자산(전기말)(I-II+III)	-	1,295,388,555,010	18,698,084,400	1,314,086,639,410
I. 기초순자산(당기초)	-	1,295,388,555,010	18,698,084,400	1,314,086,639,410
1. 보고금액	-	1,295,388,555,010	18,698,084,400	1,314,086,639,410
II. 재정운영결과	-	115,520,773,940	-	115,520,773,940
III. 조정항목	-	105,500,000,000	(11,867,578,791)	93,632,421,209
1. 투자증권평가손실(주식 4)	-	-	(11,867,578,791)	(11,867,578,791)
2. 기타순자산의증감	-	105,500,000,000	-	105,500,000,000
IV. 기말순자산(당기말)(I-II+III)	-	1,285,367,781,070	6,830,505,609	1,292,198,286,679

“첨부된 재무제표에 대한 주석은 본 재무제표의 일부입니다.”

재무제표에 대한 주석

제 23 기 2013년 12월 31일 현재
제 22 기 2012년 12월 31일 현재

남북협력기금

1. 기금의 개요

남북협력기금(이하“기금”)은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에 의한 남북간의 상호교류와 협력을 지원하기 위하여 1990년 8월 1일 제정공포된 남북협력기금법에 따라 1991년 대한민국정부가 25,000백 만원을 출연하여 설치되었습니다. 기금의 운용 및 관리에 관한 사무는 남북협력기금법 제 7조 제 2항, 동법 시행령 제 5조 제 1항에 따라 한국수출입은행이 수탁기관으로 지정되어 수행하고 있습니다.

2. 중요한 회계정책

기금의 재무제표는 2009 회계연도부터 적용된 국가회계법 제 11조 제 1항의 규정에 따른 국가회계기준 및 국가회계제도심의위원회에서 승인된 남북협력기금 세부회계처리기준에 따라 작성되었습니다.

기금이 채택하고 있는 중요한 회계정책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수익의 인식

기금의 교환수익은 수익창출활동이 완료되고 그 금액을 합리적으로 측정할 수 있을 때 인식하고 있으며, 비교환수익은 해당 수익에 대한 청구권이 발생하고 그 금액을 합리적으로 측정할 수 있을 때 인식하고 있습니다. 예치금 및 대여금 등에 대한 이자수익은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고 경제적 효익의 유입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경우에 인식하고 있습니다.

(2) 현금및현금성자산

기금은 통화 및 타인발행수표 등 통화대용증권과 보통예금 및 큰 거래비용 없이 현금으로 전환이 용이하고 이자율 변동에 따른 가치변동의 위험이 중요하지 않은 유가증권 및 금융상품으로서 취득 당시 만기일 또는 상환일이 3개월 이내에 도래하는 것을 현금및현금성자산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3) 장·단기금융상품

기금은 금융기관이 취급하는 정기에금, 정기적금 및 기타 정형화된 상품 등으로 단기적 자금운용 목적으로 소유하거나 기한이 1년 이내에 도래하는 것을 단기금융상품으로 계상하고 있으며, 현금 및현금성자산 또는 단기금융상품에 속하지 아니하는 금융상품을 장기금융상품으로 계상하고 있습니다.

(4) 유가증권

기금은 유가증권에 대해 매입가액에 부대비용을 더하고 종목별로 개별법을 적용하여 산정한 가액을 취득원가로 산정하고 있으며, 유가증권을 자산의 분류기준에 따라 단기투자증권과 장기투자증권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단기투자증권은 재정상태표일 현재 만기가 1년 이내 도래하거나 1년 이내에 처분예정인 채무증권, 지분증권 및 기타단기투자증권을 포함하며, 장기투자증권은 재정상태표일 현재 만기가 1년 후에 도래하거나 1년 후에 처분예정인 채무증권, 지분증권 및 기타장기투자증권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채무증권은 상각후취득원가로 평가하고 지분증권과 기타장·단기투자증권은 취득원가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분증권과 기타장·단기투자증권은 재정상태표일 현재 신뢰성 있게 공정가액을 측정할 수 있는 경우 공정가액으로 평가하고 장부가액과 공정가액의 차이금액은 순자산조정으로 반영하고 있습니다.

유가증권의 회수가능가액이 장부가액 미만으로 하락하고 그 하락이 장기간 계속되어 회복할 가능성이 없을 경우 장부가액과의 차액을 감액손실로 인식하고 재정운영순원가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5) 대여금 등의 평가

기금은 대여금 등의 잔액에 대하여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산출된 대손추산액을 대손충당금으로 설정하고 있습니다. 기금은 재정상태표일 현재의 대여금 등의 잔액에 대하여 차주, 보증인, 유가증권 발행인, 보증의뢰인 등 관련 거래처의 채무상환능력과 금융거래내역 등을 감안하여 “정상”, “요주의”, “고정”, “회수의문”, “추정손실”의 5단계로 자산건전성을 분류하였습니다. 기금은 상기 기준에 따라 분류된 대여금에 대해서 각각 0.85% 이상(일부 업종은 0.9% 이상), 7% 이상, 20% 이상, 50% 이상 및 100% 상당액을 대손충당금으로 계상하고 있습니다.

다만, 기금은 남북협력기금 운용관리규정(통일부고시) 제 58조에 따라 남북한 당국간 사업, 지방자치단체와 공공기관에 대한 채권 및 기타 통일부장관이 해당사업의 성격상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대손충당금을 설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6) 용자보조원가충당금

기금은 대여금과 만기가 유사한 국제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제공되는 용자금의 경우 용자회계준칙에 따라 용자보조원가충당금을 설정하고 있습니다. 용자금의 원금에서 추정 회수가능액의 현재가치를 차감하여 용자보조원가충당금을 인식하고 있으며, 현재가치 평가에 사용되는 할인율은 대여금과 만기가 유사한 국제할인율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용자보조원가충당금은 매년 재정상태표일 기준으로 평가하고 있으며, 용자금의 평가에 따라 증가하거나 감소한 금액은 재정운영순원가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다만, 북한조선무역은행 및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KEDO)의 용자금 등에 대해서 차주의 특수성으로 인해 미래현금흐름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국가회계기준에 관한 규칙 제 58조 및 제 9차 국가회계제도심의위원회에서 승인된 남북협력기금 세부회계처리기준에 따라 용자보조원가충당금을 설정하지 아니하였습니다.

(7) 일반유형자산

일반유형자산의 취득원가는 당해 자산의 건설원가 또는 매입가액에 취득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을 취득원가로 하고 있습니다. 다만 무주부동산의 취득, 국가의 상대방과의 교환 및 기부채납 등의 방법으로 자산을 취득할 경우 취득 당시의 공정가액을 취득원가로 하고 있으며, 국가회계실체 또는 중앙관서 간 발생하는 관리환은 무상거래일 경우 자산의 장부가액을 취득원가로 하고 유상거래일 경우에는 자산의 공정가액을 취득원가로 하고 있습니다.

일반유형자산에 사용수익권이 설정된 경우 이는 자산의 차감으로 표시하며 사용수익권은 수증자가 무형자산으로 인식하는 금액과 동일하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일반유형자산의 내용연수를 증가시키거나 가치를 실질적으로 증가시키는 지출은 자산의 증가로 처리하고, 원상회복시키거나 능률유지를 위한 지출은 비용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8) 자산의 감액 등

기금의 재정상태표 자산 중 국가회계기준에서 별도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자산의 진부화, 물리적인 손상 및 시장가치의 급격한 하락 등의 원인으로 인하여 당해 자산의 회수가능가액이 장부가액에 미달하고 그 미달액이 중요한 경우에는 이를 장부가액에서 직접 차감하여 회수가능가액으로 조정하고, 장부가액과 회수가능가액의 차액은 동 자산에 대한 감액손실의 과목으로 재정운영순원가에 반영하며 감액내역을 주석으로 기재하고 있습니다. 다만, 감액한 자산의 회수가능가액이 차기 이후에 당해 자산이 감액되지 않았을 경우의 장부가액 이상으로 회복되는 경우 장부가액까지 한도로 하여 동 자산에 대한 감액손실환입 과목으로 재정운영순원가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9) 우발상황

기금은 지출의 시기 및 금액은 불확실하지만 과거사건이나 거래의 결과로 인하여 재정상태표일 현재 국가회계실체가 부담하는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자원이 유출될 가능성이 높고 그 금액을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있는 경우 그 손실금액을 장기충당부채로 계상하고 있습니다.

또한 재정상태표일 현재 우발손실의 발생이 확실하지 않거나, 우발손실의 발생은 확실하지만 그 손실금액을 합리적으로 추정할 수 없는 경우 우발상황의 내용과 우발손실에 따른 재무적 영향을 주석으로 기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발이익의 발생이 확실하고 그 이익금액을 합리적으로 추정할 수 있는 경우 우발상황의 내용을 주석으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10) 외화자산의 환산

기금은 화폐성 외화자산을 보고기간 종료일 현재 서울외국환중개㈜가 고시한 미달러화 기준환율(당기말 ₩1,055.3/USD) 및 재정환율로 환산하고 있으며, 이로 인한 환산손익을 재정운영순원가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11) 출연금

기금이 수령하는 정부 또는 민간으로부터의 출연금은 기금설치 목적을 위해 지출되는 재원의 용도에 따라 달리 회계처리하며, 재정운영표의 비교환수익 등 또는 순자산변동표 조정항목의 기타순자산의 증감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단, 재원의 용도를 일률적으로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그 주된 용도에 따라 회계처리하고 있습니다.

기금이 출연금 등으로 조성된 재원을 운영비 등에 충당하여 조성된 재원이 소진되는 경우 재정운영표의 비교환수익 등으로 처리하며, 주로 자산 또는 부채의 변화를 가져오는 용도(자산매입, 대여 등)로 사용되어 조성된 재원의 원본이 유지되는 경우 순자산변동표의 조정항목에 기타순자산의 증감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12) 위탁수수료

기금은 남북협력기금법 제 7조 제 2항 및 동법시행령 제 5조 제 1항에 따라 한국수출입은행에 운용 및 관리업무를 위탁하고 있으며, 통일부와 협의된 위탁수수료를 한국수출입은행에 지급하고 프로그램원가로 계상하고 있습니다.

3. 현금및현금성자산 등

2013년과 2012년 12월 31일 현재 기금의 현금및현금성자산 등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백만원)

구 분	연이자율(%)	금 액		금융기관
	2013.12.31	2013	2012	
현금및현금등가물 :				
MMDA	2.60	1,212	1,767	국민은행
MMT	2.60 ~ 4.00	181,624	260,319	우리투자증권 외
MMF	실적배당	742	723	삼성자산운용
MMW	3.70 ~ 3.96	237,215	137,481	현대증권 외
정기예금	2.63	2,000	-	우리은행 외
		422,793	400,291	
단기금융상품 :				
정기예금	3.16 ~ 3.27	42,500	121,100	의환은행
MMT	3.60 ~ 3.85	76,000	-	신한금융투자 외
MMW	3.70 ~ 3.95	55,000	2,000	현대증권 외
표지어음	-	-	25,000	기업은행
		173,500	148,100	
		596,293	548,391	

4. 장·단기투자증권

2013년과 2012년 12월 31일 현재 기금의 장·단기투자증권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백만원)

구 분	2013			2012		
	취득원가	공정가액	장부가액	취득원가	공정가액	장부가액
단기투자증권						
지분증권(*)	103,300	110,581	110,581	388,300	406,998	406,998
채무증권	-	-	-	-	-	-
	103,300	110,581	110,581	388,300	406,998	406,998
장기투자증권						
지분증권(*)	109,000	108,549	108,549	-	-	-
채무증권	-	-	-	-	-	-
	109,000	108,549	108,549	-	-	-
	212,300	219,130	219,130	388,300	406,998	406,998

(*) 기금이 보유하고 있는 지분증권은 모두 시장성이 있는 지분증권이며, 당기 중 발생한 투자증권평가손실 11,868 백만원 및 전기 중 발생한 투자증권평가이익 2,352 백만원을 각각 장부가액에 반영하였습니다. 다만, 당기 중 발생한 투자증권평가손실 11,868 백만원에는 투자증권 처분시 처분이익으로 계상된 투자증권평가이익 감소분 14,723 백만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5. 대여금

(1) 기금은 남북한의 상호교류 및 경제협력사업을 통한 남북교류협력의 촉진과 민족공동체회복에 기여하기 위하여 용자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용자대상은 남북간 경제교류사업을 시행하는 남한 주민 및 남북 당국간 합의된 교류협력사업 등에 대한 북한당국 등입니다.

(2) 2013년과 2012년 12월 31일 현재 용자사업의 규모 및 이자율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백만원)

구 분	연이자율(%)	금 액	
	2013.12.31	2013	2012
용자금(*)	0.0 ~ 5.9	2,716,555	2,668,407
용자보조원가충당금		(10,432)	(6,843)
대손충당금		(8,895)	(8,220)
		2,697,228	2,653,344

(*) 상기 용자금은 유효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용자를 제공하는 용자사업에서 발생한 대여금입니다.

(3) 2013년과 2012년 12월 31일 현재 기금의 정부외장·단기대여금의 세부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백만원)

구 분	내 용	연이자율(%)	금 액	
		2013.12.31	2013	2012
정부외 단기대여금	실적한도대출	1.0 ~ 1.8	6,807	6,948
	반출자금대출	3.0 ~ 4.9	460	460
	특별경제협력자금대출	2.0 ~ 3.0	40,835	54,824
	경제협력사업자금대출	1.8 ~ 5.9	88,466	26,629
	민족공동체회복지원자금대출	1.0	4,897	3,298
	외화표시민족공동체회복지원자금대출	1.0	37,395	-
			178,860	92,159
정부외 장기대여금	경제협력사업자금대출	1.8 ~ 5.9	147,158	149,297
	민족공동체회복지원자금대출	1.0	57,822	55,858
	경수로민족공동체회복지원자금대출	-	1,374,393	1,374,393
	외화표시민족공동체회복지원자금대출	1.0	958,322	996,700
			2,537,695	2,576,248
			2,716,555	2,668,407

(4) 2013년 12월 31일 현재 기금의 정부외장·단기대여금의 대출종류별 정부승인금액 등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USD, 백만원)

대출종류	차주별	정부승인금액	집행금액	회수금액	대출잔액
대북식량차관(2000)	북한조선무역은행	USD 100,000	USD 88,355	USD -	USD 88,355
대북식량차관(2002)	북한조선무역은행	110,000	106,000	-	106,000
대북식량차관(2003)	북한조선무역은행	110,000	106,000	-	106,000
대북식량차관(2004)	북한조선무역은행	124,000	117,986	-	117,986
대북식량차관(2005)	북한조선무역은행	155,000	150,000	-	150,000
대북식량차관(2007)	북한조선무역은행	154,000	151,701	-	151,701
대북자재장비차관(2002)	북한조선무역은행	45,000	42,887	-	42,887
대북자재장비차관(2003)	북한조선무역은행	60,000	68,051	-	68,051
대북자재장비차관(2005)	북한조선무역은행	28,500	21,959	-	21,959
대북경공업원자재차관(2007)	북한조선무역은행	80,000	80,000	2,400	77,600
개성공업지구지원재단 대출(2013)	개성공업지구지원재단	13,000	13,000	-	13,000
		USD 979,500	USD 945,939	USD 2,400	USD 943,539
대북경수로사업 대출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	3,542,000	1,374,393	-	1,374,393
개성공업지구지원재단 대출(2004)	개성공업지구지원재단	26,100	22,920	6,876	16,044
개성공업지구지원재단 대출(2005)	개성공업지구지원재단	900	801	240	561
개성공업지구지원재단 대출(2007)	개성공업지구지원재단	10,400	9,255	925	8,330
개성공업지구지원재단 대출(2008)	개성공업지구지원재단	15,900	13,556	-	13,556
개성공업지구지원재단 대출(2009)	개성공업지구지원재단	8,910	7,290	-	7,290
개성공업지구지원재단 대출(2010)	개성공업지구지원재단	3,768	3,505	-	3,505
개성공업지구지원재단 대출(2011)	개성공업지구지원재단	5,999	5,527	-	5,527
개성공업지구지원재단 대출(2012)	개성공업지구지원재단	3,338	3,338	-	3,338
개성공업지구지원재단 대출(2013)	개성공업지구지원재단	4,968	4,568	-	4,568
반출입 및 경제협력사업자금 대출 (실적한도대출 포함)	한국관광공사 외	366,556	326,674	42,948	283,726
		3,988,839	1,771,827	50,989	1,720,838
		USD 979,500	USD 945,939	USD 2,400	USD 943,539
		3,988,839	1,771,827	50,989	1,720,838

2013년 12월 31일 현재 외화표시 정부외장·단기대여금의 원화환산액은 995,717백만원입니다.

(5) 2013년과 2012년 12월 31일 현재 기금의 정부의장·단기대여금에 대한 사용자보조원가충당금 및 대손충당금의 세부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백만원)

구 분	2013		
	정부의 장·단기대여금	사용자보조원가충당금	대손충당금
대북식량및자재장비등 차관(*)	981,998	-	-
대북경수로사업 본공사비 대출(*)	1,374,393	-	-
개성공업지구지원협회 대출	76,438	4,163	-
반출입 및 경제협력사업자금 대출 (실적한도대출 포함)	283,726	6,269	8,895
	<u>2,716,555</u>	<u>10,432</u>	<u>8,895</u>

구 분	2012		
	정부의 장·단기대여금	사용자보조원가충당금	대손충당금
대북식량및자재장비등 차관(*)	996,700	-	-
대북경수로사업 본공사비 대출(*)	1,374,393	-	-
개성공업지구지원협회 대출	59,156	2,641	-
반출입 및 경제협력사업자금 대출 (실적한도대출 포함)	238,158	4,202	8,220
	<u>2,668,407</u>	<u>6,843</u>	<u>8,220</u>

(*) 2013년 12월 31일 현재 기금은 대북식량및자재장비등 차관 및 대북경수로사업 본공사비 대출 2,356,391백만원(전기: 2,371,093백만원)에 대하여 국가회계기준에 관한 규칙 제 58조 및 제 9차 국가회계제도심의위원회에서 승인된 남북협력기금 세부회계처리기준에 따라 사용자보조원가충당금을 설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2013년 12월 31일 현재 북한조선무역은행 대여금 981,998백만원과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KEDO) 대여금 1,374,393백만원은 관련 차주의 특성상 향후 상황변화 등에 따라 회수가능성에 유의적인 불확실성이 존재하며, 이 중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KEDO) 대여금의 경우 2013년 12월 31일 현재 대북경수로사업이 중단된 상태로서 향후 사업재개의 불확실성으로 인하여 동 대여금의 회수가능성에는 특히 유의적인 불확실성이 존재합니다.

(6) 기금이 당기와 전기 중 사용자사업과 관련하여 재정운영표에 사용자보조비용 및 대손상각비로 인식한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백만원)

구 분	2013	2012
사용자보조비용	5,810	6,671
대손상각비	800	590
	<u>6,610</u>	<u>7,261</u>

6. 외화자산

2013년과 2012년 12월 31일 현재 기금의 외화자산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USD, 백만원)

계정과목	외화종류	2013.12.31		2012.12.31	
		외화금액	원화환산액	외화금액	원화환산액
단기대여금	USD	35,435	37,395	-	-
장기미수채권	USD	53,381	56,333	53,381	57,176
장기대여금	USD	908,104	958,322	930,539	996,700
		<u>996,920</u>	<u>1,052,050</u>	<u>983,920</u>	<u>1,053,876</u>

7. 일반유형자산

(1) 당기와 전기 중 기금의 일반유형자산의 변동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백만원)

구 분	2013		
	기초	취득	기말
건설중인 토지	5,839	3,967	9,806
건설중인 건물	8,958	10,528	19,486
	<u>14,797</u>	<u>14,495</u>	<u>29,292</u>

구 분	2012		
	기초	취득	기말
건설중인 토지	-	5,839	5,839
건설중인 건물	-	8,958	8,958
	<u>-</u>	<u>14,797</u>	<u>14,797</u>

(2) 기금은 한반도통일미래센터(구.남북청소년교류센터) 건립사업과 관련하여 당기 중 14,285백만원을 건설중인 자산에 지출하였습니다.

8. 차입금

(1) 2013년과 2012년 12월 31일 현재 기금의 차입금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백만원)

구 분	차입처	연이자율(%)	금 액	
		2013.12.31	2013	2012
공공자금관리기금 예수금 (차감: 1년이내상환일도래분)	한국은행	2.94 ~ 5.89	2,362,491	2,362,491
			(291,591)	(530,000)
			<u>2,070,900</u>	<u>1,832,491</u>

(2) 2013년 12월 31일 현재 기금의 차입금의 연도별 상환계획은 다음과 같습니다.

상환연도	금액
2014년	291,591
2015년	90,500
2016년	207,000
2017년	765,000
2018년	278,400
2019년 이후	730,000
	2,362,491

9. 프로그램순원가

(1) 당기와 전기 중 기금의 재정운영표에 계상되어 있는 프로그램순원가를 발생성격에 따라 구분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2013				
	남북사회문화교류	인도적문제해결	남북경제협력	개성공단지원	합계
업무대행수수료	19	141	1,791	778	2,729
기타용역비	5	15	148	-	168
기타민간보조비	2,045	15,329	6,508	5,829	29,711
대손상각비	-	-	4,963	-	4,963
용자보조비용	-	-	3,552	2,258	5,810
보험금지급비	-	-	934	-	934
	2,069	15,485	17,896	8,865	44,315

구분	2012				
	남북사회문화교류	인도적문제해결	남북경제협력	개성공단지원	합계
업무대행수수료	89	108	1,738	706	2,641
기타용역비	3	17	107	11	138
기타민간보조비	2,338	2,824	18,486	8,827	32,475
대손상각비	-	-	590	-	590
용자보조비용	-	-	3,684	2,987	6,671
	2,430	2,949	24,605	12,531	42,515

(2) 당기와 전기 중 기금의 재정운영표에 계상되어 있는 프로그램총수익을 발생성격에 따라 구분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백만원)

구 분	2013				
	남북사회문화교류	인도적문제해결	남북경제협력	개성공단지원	합 계
정부의용자금이자수익	-	-	6,228	1,175	7,403
보험수익	-	-	1,407	-	1,407
잡이익	15	474	1,166	744	2,399
	15	474	8,801	1,919	11,209

구 분	2012				
	남북사회문화교류	인도적문제해결	남북경제협력	개성공단지원	합 계
정부의용자금이자수익	-	-	5,819	949	6,768
보험수익	-	-	1,678	-	1,678
잡이익	39	5	205	1,135	1,384
	39	5	7,702	2,084	9,830

10. 순자산조정

당기와 전기 중 기금의 순자산조정의 변동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백만원)

구 분	2013				2012			
	당기초	증가	감소	당기말	전기초	증가	감소	전기말
투자증권평가손익								
단기투자증권								
지분증권	18,698	3,306	14,723	7,281	16,346	11,155	8,803	18,698
장기투자증권								
지분증권	-	(451)	-	(451)	-	-	-	-
	18,698	2,855	14,723	6,830	16,346	11,155	8,803	18,698

11. 우발상황 및 약정사항

(1) 기금은 북한에 투자하는 남한기업에게 북한 당국의 몰수, 사업중단 등 경영외적 사유로 투자손실이 발생하는 경우 그 손실의 일부를 보상해 주는 경제협력사업보험계약을 개성공업지구 투자기업과 체결하고 있습니다. 2013년 12월 31일 현재 보험계약의 주요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종 류	회 사 명	계약확정금액	(단위: 백만원)
			계약미확정금액
경제협력사업보험	한국산업단지공단 외 98개 업체	206,708	109,880

(2) 남북경제협력사업과 관련한 보험계약은 대북사업의 특성상 일반적인 보험계약과는 달리 정치적 위험인 비상위험이 크게 내재되어 있기 때문에 장래 보험금의 지급이 발생할 가능성을 합리적으로 판단하기 어렵고 그 금액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없습니다. 이에 따라 기금은 국가회계기준에 관한 규칙(기획재정부령) 제 44조 및 보험회계준칙(기획재정부고시)에 의거한 보험충당부채를 설정하지 아니하였습니다.

(3) 2013년 4월 개성공업지구의 사업중단으로 인해 기금은 2013년 8월 7일자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 의결에 따라 59개 업체에 1,768억원의 보험금을 지급하였습니다. 그러나, 2013년 9월 제 2차 남북공동위원회의 합의로 개성공업지구가 재가동됨에 따라 기금은 경제협력사업보험 취급기준(통일부고시)에 의거 보험금 수령업체에게 보험금의 반납을 요청하였으며, 2013년 12월 31일 현재 1,167억원을 회수하였습니다. 기금은 2013년 12월 31일 현재 미회수한 보험금 601억원을 기타의미수금으로 계상하고 있습니다. 한편, 기금은 경험보험 약관 및 보험계약자와 체결한 약정서에 따라 보험금 미반납업체의 개성공업지구 내 재산에 대한 대위권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4) 2013년 12월 31일 현재 기금의 계류중인 소송사건은 없습니다.